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2023. 4

1. 개 요

2. 인 권 존 중 경 영

3. 안 전 · 보 건

4. 환 경

5. 윤 리

6. 경 영 관 리

1. 개요

1.1. 행동규범 목적

HD현대오일뱅크는 협력회사들과 함께 건강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회사들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 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 행동규범 대상 및 기대 사항

모든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2~3차 협력회사들에게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1.3. 추가 사항

HD현대오일뱅크 또는 HD현대오일뱅크가 지정한 외부 감사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는 필요시 서면 또는 현장점검/실사를 진행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지도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인권존중 경영

협력회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활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인권존중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2.1. 고용상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1) 협력회사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 채용 및 고용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 군인, 연금 자격, 유전정보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4) 협력회사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협력회사는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거나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임신 또는 순결 검사 등)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2.2.결사의 자유 보장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해야하며, 노사 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고 관리(정기적 소통, 이행 결과에 대한 문서나 사진 보관)해야 합니다.

2.3.미성년 근로자

- 1) 협력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노동을 허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15세 미만,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의미)
- 2) 협력회사는 채용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령 확인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협력회사의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이 발견되면 HD 현대오일뱅크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협력회사가 18세 미만 근로자(미성년 근로자) 대상 근로병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비롯하여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를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2.4.학생 근로자

- 1)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를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고용하고 보호·관리 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를 파견한 학교가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고용된 학생 근로자의 교육 파트너를 법령에 근거해 엄격히 실시하고 충분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5.자발적 취업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주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이주근로자가 본국을 출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 국가로 입국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서의 교체나 수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업무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협력회사는 비자발적 노동¹⁾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²⁾ 등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¹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또는 비 윤리적인 계약에 묶인 노동 등이 있음.

² 노예제 및 인신 매매 등이 있음.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및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5) 협력회사는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기숙사, 숙소 등)의 출입과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6) 협력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신상과 고용과 관련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³⁾을 보관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2.6.근로시간 관리

- 1) 협력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단,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지 법령)에 근거하여 최장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초과근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2.7.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항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법령에 근거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정수당 등을 산정 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해진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에 따른 공제나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정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 여권,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민 관련 문서 등이 있음.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노력해야 합니다.

- 6)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7) 협력회사는 임신 근로자에게 법령이 요구하는 휴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8.인도적 대우

- 1)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인도적 대우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조치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3.1.산업 안전

- 1) 협력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위험성평가결과에 따른 위험요소를 통제/제거하기 위해,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기준 마련, 작업 절차 수립,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 상태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3.2.비상사태 대비

- 1) 협력회사는 발생 가능한 사고와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유형에 따른 보고/전파 체계와 대피/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탈출, 화재진압, 소방장비 사용, 복구 계획을 포함한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3.3.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소견자 등을 관리해야 하며, 발병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3.4.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이상온도, 방사선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며, 근로자가 기준치 이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3.5.신체 부담 업무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인 수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체력소모가 과다한 작업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6.설비 안전

협력회사는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정비해야 하며,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작업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7. 위생시설, 식당, 기숙사 관리

1)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를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 및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사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적당한 개인 공간이 확보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상 탈출구, 소방시설, 냉·난방 설비,

환기장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8.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관계법령을 만족하는 사내 안전보건 교육 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는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4. 환경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수준을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1.환경경영시스템⁴ 구축

- 1)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HD현대오일뱅크와의 계약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협력회사는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원료 및 공정 변경과 설비 관리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2.대기오염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 현황을 상시 점검 및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⁴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을 공표하였고 협력회사는 내부 시스템 정비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해 ISO 14001 인증 취득을 고려할 수 있음.

- 2)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출 및 방진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4.3.수자원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우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출물이 우수 관거, 공공 상수도 등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예방해야 합니다.

4.4.화학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과 유해성을 평가 후 선정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반, 저장, 보관, 사용 등)할 때는 관리 대장을 기록·보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 표시나 정보(MSDS, 경고 표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자에게 화학물질의 사용·보관·폐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5.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1)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사용 절감, 공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자체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6.폐기물 관리

- 1) 협력회사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사용/재활용을 확대 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발생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고 폐기물의 성상에 알맞은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보관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실사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4.7.소음·진동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 근로자와 주민 등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설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4.8.토양오염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장내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토양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기·수시·누출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5. 윤리경영

협력회사는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을 위해 현지 법을 준수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으로 윤리경영 방침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 및 공정거래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5.1. 거래관계의 투명성 확보

- 1) 협력회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이득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위법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이해관계 충돌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 주어야 합니다. 단, 선물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 후 처리 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써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허위 증빙을 통해 공금을 전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⁵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SO 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공표하였고 협력회사는, 내부 시스템 정비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해 ISO 37001 인증 취득을 고려할 수 있음.

- 5) 협력회사는 브로커, 컨설턴트 등 제3자를 선임한 경우, 뇌물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협력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부적절한 제안, 뇌물 또는 부당/부적절한 이익을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5.2.바람직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1) 협력회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HD현대오일뱅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천사항이 협력업체간 거래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 ㄱ)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우월한 교섭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
 - ㄴ) 협력업체의 공정한 등록(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회사 등록 및 운영 절차 공개하여 거래의 공정성 제고
 - ㄷ)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위반행위 예방
 - ㄹ)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 서면 발급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면 발급 문화 확산

5.3.정보 공개 및 보호

- 1) 협력회사는 노무·안전보건·환경, 경영현황,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기록의 위조나 부실 표기 또는 허위 공개/진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협력회사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 제조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전 허가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협력회사는 이해관계자들(임직원 및 고객사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4.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 1) 협력회사는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창구와 내·외부 신고자 보호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절차를 상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6. 경영관리

협력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본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명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배포 및 게시되어야 합니다.

6.1.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 및 개선

- 1) 협력회사는 정관과 사규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최소 분기 1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에 대해 청렴성을 유지하고, 인권존중 경영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영향평가, 처벌, 개선 및 이행절차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6.2.이해관계자 소통

- 1) 협력회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근로자, 관리자, 공급업체, 고객, 경영진 등) 정기적인 소통 절차를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ESG이슈(법령 또는 규정 및 고객의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리스크 등)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보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본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 및 기록하고 주요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6.3.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1) 협력회사는 분쟁 위험지역에서 공급되는 광물(텅스텐, 주석, 금, 탄탈륨 및 코발트)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계약에서 요구하지 않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또는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수출 제한 및 경제 제재에 있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 5) 협력회사는 2~3차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과 동등한 책임과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여야 합니다.

6.4.리스크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사업에 미칠 영향의 수준에 따라 위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파악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명”는(은) HD현대오일뱅크의 협력회사로서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협력회사명”

대표이사 : ○ ○ ○ 전자서명